

의안번호	제561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4년 4월 12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1
----------	-----

제출연월일 : 2024년 4월 1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등 개정(시행일: 2023. 6. 11.)에 따라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목적(안 제1조)
-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안 제2조~제5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서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회의의 소집권자·방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 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수당 등(안 제8조~제10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북도의회 의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직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신과 서면심의회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각각 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련법령 발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
2.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

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도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도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거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조례표준안에 따라 체계적인 지명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위원회 출석 위원 수당 및 여비를 지급

3. 관련조문

○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5년 (2024 ~ 2028)
- 연간 위원회 개최 건 : 2회
- 지급대상(위촉 위원수) : 7명

나. 추계 결과

- 산출과정
 - 출석수당 100,000원 × 7명 × 2회 × 5년 = 7,000천원
 - 안건심사 수당 30,000원 × 7명 × 2회 × 5년 = 2,100천원
- 산출결과 : 2024년부터 향후 5년간 9,100천원 소요(연간 1,82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장 이헌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1,820	1,820	1,820	1,820	1,820	9,100
위원 수당	1,820	1,820	1,820	1,820	1,820	9,100
재원 조달	1,820	1,820	1,820	1,820	1,820	9,1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820	1,820	1,820	1,820	9,1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